

세법연구 12-04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 성실공익법인을 중심으로 -

2012.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손 원 익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형 민 공인회계사

정 경 화 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10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개요	10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과세특례 및 규제사항	12
가.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관련 내용	12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관련 내용	13
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 제도	21
라. 성실공익법인과 관련한 사항	23
III.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25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현황 및 이사진 구성	25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주식 출연 현황 등	42
3. 공익법인별 배당수익률과 배당구성비율 현황	55
4. 계열사별 성실공익법인 판정 및 기준준수 여부	57
IV. 외국의 공익법인제도	70
1. 미국	70
가. 개요	70
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규정	73
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제도	75
2. 일본	80
가. 개요	80
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규정	83

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제도.....	84
3. 국제비교.....	87
V. 정책방향.....	90
참고문헌.....	94
부 록	
[부록 1] 공익사업의 범위.....	95
[부록 2] 특수관계 범위.....	100

표 목 차

〈표 II-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비교.....	11
〈표 II-2〉 비영리법인의 시점별 출연재산 과세방법.....	11
〈표 II-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17
〈표 III-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현황 및 이사진 구성.....	27
〈표 III-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주식 출연 현황 등.....	44
〈표 III-3〉 공익법인별 배당수익률과 배당구성비율 현황.....	55
〈표 III-4〉 계열사별 성실공익법인 판정 및 기준준수 여부	61
〈표 IV-1〉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	89

I. 서론

- 경제, 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조세수입만으로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따라서 공익법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의 지출만으로 소외계층,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공익법인이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공익법인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출연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기부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또한 세제상의 혜택과는 별개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여러 규제 정책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공익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한 조세 혜택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출연·취득 및 보유 제한, 출연재산의 목적사업사용 의무화,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지난해 초 포스코 퇴직임원단이 포스텍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음¹⁾

- 고발장에는 △주식투자와 관련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그 후 이사회에도 계속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8조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5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포스코 내부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이 포스텍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했지만 당시 포스텍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 보류됐다”라고 하였다고 보도내용은 전함
 - 포스텍 실무진은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임원진에게 투자 부적절 의견을 보고했음
 - 포스텍의 이사장이 동일하게 이사장으로 역임했던 포스코교육재단에서도 그해 5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고려했던 바가 있었음
 - 포스코 교육재단의 ‘투자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실무진은 부산저축은행 투자에 대해 재무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투자 부적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검토 자료는 “상품의 제시 수익률은 연간 12%로 저금리 기조하에서 매력적이거나 최근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중심의 여신 운용으로 인해 부실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적시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는 세법의 규정만으로는 실제적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이행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동시에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성실공익법인²⁾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여 주고 있는데, 성실공
-
- 1) 동아일보 2012.5.18 보도내용 참조
-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Ⅱ.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중 ‘라. 성실공익법인과 관련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른 한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

- 또한 공시자료 등을 이용해서 여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파악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공익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방안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로 공익법인과 관련된 국내법의 내용 및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운영실태와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미국 및 일본의 공익법인 관련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제Ⅲ장 및 제Ⅳ장을 토대로 현행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II.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개요

-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나 영리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³⁾
 - 영리법인이 자산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됨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설립 이후 수증받은 재산 포함)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i) 설립 시점에서 출연받은 재산, ii) 설립 이후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됨

-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의료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일부 특정계층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비영리법인과 구분됨
 - ‘공익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 범위보다 제한적임⁴⁾

3) 「상증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4조 제1항

4) 구체적인 공익사업 종류에 대해서는 「상증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

○ 다만, 출연 이후 고유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1> 및 <표 II-2>와 같음

<표 II-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비교

구분		법인세	증여세
영리법인		과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과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사후관리 안 되면 과세
		기타	비과세

<표 II-2> 비영리법인의 시점별 출연재산 과세방법

출연 시점	수증받은 사업부문	법인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 여부
설립 시점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과세하는 것이 원칙
	수익사업	비과세(자본거래)	과세하는 것이 원칙
설립 이후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과세하는 것이 원칙
	수익사업	과세(대가성 없이 출연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일부 행정해석 존재)	증여세 면제

정하고 있음(<부록 1> 참조)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법상 과세특례 및 규제사항

가.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관련 내용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상증법」 제16조 제1항)
 - 피상속인이 유언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유증을 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출연)하는 경우가 있음
 - 만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 만일 상속재산 중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과 다음의 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등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⁵⁾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다음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라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음
 - 일정한 공익법인⁶⁾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⁷⁾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

5) 본 보고서에서의 ‘특수관계’라 함은 「상증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부록 2〉를 참조

6) 성실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을 말함

익법인에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 이 때는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 다만,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관련 내용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그 이후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음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익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상증법」 제48조 제1항)

○ 그러나 고유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당해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함

야 함(「상증법」 제48조 제2항)

-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등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일정한 경우’란 앞서 설명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함

2) 사후관리 규정(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요건)

가) 출연재산의 사용제한

- 공익사업에의 재산의 출연을 장려하되, 이를 통한 조세회피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함
 -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나)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제한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 여기서 ‘실적’이란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다) 운용소득 사용제한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됨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의 70%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여기서 '실적'이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함
 - '기준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라) 주식 등의 취득·보유 제한

-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다음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

하여 취득·보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음

○ 일정한 공익법인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⁹⁾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이 때는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여야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소정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성실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은 본 규정 적용에서 제외함

○ ① 외부 회계감사, ②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③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의 50%까지 보유 가능함

○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 공익법인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3년 또는 5년) 내에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만약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8) 성실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을 말함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함

- 다만,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5% 이내 보유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었음

마)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제한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및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 제외)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상의 내용 및 여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3>과 같음

<표 II-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사후관리사항		추징내용
1. 출연재산 사용제한	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한 경우 ¹⁾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²⁾
	②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¹⁾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³⁾
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①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⁵⁾ ①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분: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②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당해 미달 사용금액

〈표 II-3〉의 계속

	사후관리사항	추징내용
	②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⁶⁾	매각대금 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⁷⁾
3. 운용소득 사용제한	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⁹⁾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상증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②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¹⁰⁾ 기준금액= (가 - 나)×70% 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⁷⁾
4. 주식 등의 취득·보유 제한	①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 ¹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¹²⁾

〈표 II-3〉의 계속

	사후관리사항	추징내용
	가. 취득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때 ¹³⁾ ③ i)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ii) 상증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동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이 동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¹⁵⁾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¹⁴⁾ 「상증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동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거나 동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 부과 ¹⁵⁾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 ¹⁶⁾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 ¹⁷⁾
6.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제한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¹⁸⁾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¹⁹⁾
7. 자기내부 거래제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²⁰⁾ · 출연자 및 그 친족 ·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 위의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²¹⁾

〈표 II-3〉의 계속

사후관리사항		추징내용
8. 공익사업 수혜자 제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 는 것인 때 ²²⁾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²³⁾
9. 잔여재산 분배제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 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²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 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 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 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²⁵⁾

- 주: 1)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5)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6)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7) 상증법 제78조 제9항
 8)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3호
 9)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10)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
 11)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12)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13) 상증법 제48조 제9항
 14) 상증법시행령 제78조 제7항
 15) 상증법 제48조 제11항
 16) 상증법 제48조 제8항
 17) 상증법 제78조 제6항
 18) 상증법 제48조 제10항
 19) 상증법 제78조 제8항
 20) 상증법 제78조 제3항
 21) 상증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22)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23)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
 24)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25) 상증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 제도

- 상증법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행정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상증법」 제48조 제5항)
 -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출연자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매각자산 및 그 사용명세, 운용소득의 사용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명세서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및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 증빙서류 등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상증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변호사·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확인을 받고, 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상증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다만,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이하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면제함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종교, 학교법인 제외) 등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음(상증법 제50조 제3항)
 -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음

-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함(「상증법」 제50조의 2)

-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제어장치로서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한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상증법」 제50조의 3)
 - 일반 국민이 언제든지 공익법인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Portal Site¹⁰⁾를 설치·운영함
 -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함
 - 다만,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시의무가 있음
 - 주요 공시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포함)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 대표자·이사·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항에 관한 사항
 - 주식보유 현황 등
 - 공익법인이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 국세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주무장관에게 관련사실을 보고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10) <http://npoinfo.hometax.go.kr/distribution/wepa8801.jsp>

라. 성실공익법인과 관련한 사항

- 2008년 2월 22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성실공익법인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이라 정의함

- 2008년 2월 22일 시행령 개정 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구체적인 5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의 이행
 - 「상증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 「상증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됨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봄)의 5분의 1 이하
 - 단,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계산에서 제외함

- 성실공익법인에 상속재산 중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상속재산 중 주식 등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
 - 상속재산 중 주식 등을 성실공익법인에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다음의 특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하여 보유

한 주식 부분을 초과 보유일로부터 3년 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에 있어서 증여세 부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
 - 주식 등을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더라도 다음의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없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 부분을 초과 보유일로부터 3년 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취득 시 주식 보유 비율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
 - 주식 등을 10%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더라도 다음의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없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식 등을 취득·보유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등의 총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 규정적용이 안 됨
 - 1996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유예기간 내 의무처분 규정적용이 안 됨

Ⅲ.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 2011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총수 있는 집단 38개와 총수 없는 집단 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8개, 총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음
 -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증법」 제50조의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의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 다만, 공시자료 중에는 부정확한 경우나 공시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익법인이 회계 및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한 담당자가 단체 운영과 세무 업무를 병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류 자료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자발적인 공시입력으로 인해 공시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세무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표>상의 일부 자료는 국세청 공시시스템 자료와 다른데, 이는 공시담당자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외부 전문가와의 구두 통화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임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현황 및 이사진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한 공익법인의 수는 85개임¹¹⁾

- 기업집단 중 삼성 7개, 현대자동차 1개, SK 2개, LG 5개, 롯데 3개, 현대중공업 5개, GS 2개, 한진 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조사기업 중 공익법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은 LS, KCC, 한진중공업, 하이닉스, 대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 총 11개 집단으로 조사되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출연자 등이 이사취임 제한기준(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 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개정된 것임
 - 세무서장 등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함¹²⁾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법인의 경우 5분의 1의 규정 제한은 없음(「상증법」 제48조 제8항 및 제12조 제4호)
- 공익법인 중 SK의 행복나눔재단, 한진의 인하학원, KT의 KT문화재단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공시자료상 가산세 부과 대상임

11) 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각 기업집단 내의 신뢰성 높은 내부문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부 인터넷자료나 공시 담당자의 전화 인터뷰 등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익법인의 존재 유무나 그 수에 대해서 완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음

12) 「상증법」 제78조 제6항

〈표 Ⅲ-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현황 및 이사진 구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보육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의료사업, 상찬사업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진기, 삼성전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에버랜드, 에스원, 제일모직, 삼성코닝정밀소재, 태양산업, 민영기, 이용섭, 이서현	이수빈, 이종철, 김화중, 이영애, 차홍봉, 안경환, 이종서	이수빈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삼성문화재단	미술관운영, 장학사업, 문화·학술 단체지원 등	이병철, 삼성물산,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진기,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김인숙, 김홍석, 이우환, 정연두	이건희, 정양모, 이종상, 안휘준, 박영주, 김원, 서정돈, 김영호, 이인호, 김은선	이건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삼성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제일모직, 이진희	이수빈, 박성희, 김용문, 이혜경, 김문조, 이경호	이수빈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삼성꿈장학재단	교육소외계층의 실직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멘토링꿈장학사업, 배움터교육지원사업, 리더육성장학사업, 글로벌장학사업)	이건희, 강원랜드, 삼성에버랜드	손병두, 금동화, 한강수, 신인령, 윤계삼, 박철, 이상감, 이수창, 신영무, 이혜숙	이수창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삼성	호암재단	호암상 운영, 전시시설 운영, 학술연구지원사업	삼성전자, 제일제당, 한솔제지, 한솔개발, 한솔화학, 한솔PCS, 새한, 새한미디어, 새한텔레콤, 새한건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종합금융	이현재, 김상주, 윤형섭, 김학준, 김정배, 문용린	
	삼성언론재단	장학 및 지원사업, 학술연구 및 저술지원사업, 언론발전기여사업, 재단목적달성사업	삼성전자	정창영, 김문순, 김정명, 박영상, 배인준, 신영무, 최학래, 배홍규, 서태식, 양삼승	
	삼성의료재단	의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수빈, 정명희, 신언항, 송광수, 엄기영, 박정로, 서정돈, 이종철, 한원근, 김계정	
현대자동차	현대차 정몽구 재단	① 공연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② 지역별 차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③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복지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 ④ 교육기관 설립 지원 및 기타 교육지원 사업 ⑤ 환경친화적이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사업의 지원 및 운영 ⑥ 1~5호의 달성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정몽구	유영학, 김용환, 어윤대, 손지열, 신수정	김용환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표 III-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SK	한국고등교육재단	1. 해외유학장학생지원 2. 국내 대학원장학금지원 및 연구비지원 3.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아시아연구센터지원 및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 4. 도서관운영	-	최태원, 윤병남, 염재호, 신석민, 윤창현, 장용석, 남익현, 홍용택, 이재열, 최재원	최태원, 최재원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행복나눔재단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결식아동 급식센터 설립 및 자립지원 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등의 사업 3. 실업, 빈곤해소와 관련된 각종 홍보, 모금, 정책연구사업 4.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 지원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업	SK텔레콤, SK케미칼, SKC&C, 영남에너지서비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충남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에스아이에스	최기원, 남상곤, 정무성, 염재호, 이광택, 유항재	최기원, 남상곤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LG	LG연암문화재단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사업, 과학기술의 학술개발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	구인회, LG전자, LG화학 등	구자경, 백석주, 김광일, 김용선, 김민희, 정광수, 이수호	
	LG연암학원	천안연암전문대학 운영, 연암공업전문대학 운영,	구자경, 천안연암대 직원외, 연암공대 직원외	구자경, 변규칠, 강인구, 이현조, 구본무, 민병철, 김영태, 나기현	구본무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LG	LG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의 건립,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및 생활지원	구자경	구자경, 송복, 김진현, 이기준, 선우중호	
	LG상남 인문재단	언론인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어학교육 등 언론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구자경, LG반도체	변용식, 신상민, 김영석, 양승목, 정상규	
	LG상록재단	자연환경사업, 장묘문화 개선사업	LG CNS, LG생활건강, LG상사, LG이노텍 등	구본무, 김학준, 유영구, 어윤대, 이현재, 방상훈	구본무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롯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및 교육 기자재, 학술연구활동 지원	신격호	노신영, 이민재, 이영우, 이춘만, 서연호, 김인선, 윤성균, 김홍기	노신영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롯데	롯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무의탁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리아, 롯데제과, 대흥기획, 롯데역사, 호남석유	노신영, 신격호, 진병순, 이정행, 이정호, 이우영, 임상규, 박준형, 박원세, 조인호	노신영과 신격호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롯데삼동복지재단	소외계층 지원사업, 주민문화복지 지원사업 등	신격호, 신동인	신영자, 박내희, 변창애, 김희미자, 남상응, 권혁은, 신장영	신영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 학술, 자선, 사회복지, 의료 등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정몽준, 이흥구, 조순, 이춘림, 김진현, 이상주, 한승주, 박홍, 김유후, 장명수, 정정길, 이경숙, 정재호, 민형동, 장정자	정몽준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현대중공업					

〈표 III-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청년창업 지원,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등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오일 뱅크, 현대상사, 하이투자 증권, 현대백화점 등	정진홍, 최길진, 김태현, 안성기, 이병규, 한정화, 송기영, 권오감, 이석연	권오감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아산정책연구원	기타	정몽준, 현대중공업,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미포조선 등	정몽준, 김은미, 박성훈, 송영식, 이홍구, 함재봉, 김명자, 김성한, 김형국, 박태호, 윤남근, 장명수, 한승주	
	현대학원	교육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계식, 이수동, 윤여철, 박상규, 김도연, 최원길, 오병욱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	학술/장학	현대오일뱅크	권오감, 진태구, 최길학, 유상곤, 김용호, 김기찬, 정관희	권오감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GS	남훈재단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장학 기금 전달 등	허창수, GS건설	허창수, 성상철, 오동주, 박창일, 김기영, 신홍순	이사 6인 모두 출 연자와 특수관계 있다고 공시되어 있으나 허창수만 특수관계 있음
	GS칼텍스재단	학술,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문 화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GS칼텍스	허동수, 김대성, 이문호, 김영수, 손철남, 조방래, 김종민, 이계경, 강병석, 조홍식, 성애순, 김기태	허동수, 김기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한진	일우재단	장학사업, 문화진시사업	최현열	이명희, 위미라, 오치남, 유경희, 이년홍	이명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인하학원	교육업	미기재	조양호, 서용원, 이본수, 최희선, 박도순, 강희중, 박춘배, 김재구, 김성수, 조현아, 조원태, 이혁훈	조양호, 조현아, 조 원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정석학원	교육업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 정석기업, 토파스 여행정보	지창훈, 조양호, 김종길, 김재구, 강희중, 서용원, 박도순, 강영식, 최희선, 여준구, 이혁훈	조양호, 김종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정석물류학술재단	물류분야 연구지원으로 물류분 야 학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	김정일, 대한항공	김정일, 신우영, 오치남, 정영록, 장재구	
	재단법인 양현	해운, 물류, 해양에 관한 학술연 구 지원, 사업장학지원사업, 의 료지원사업 등	최은영	최은영, 김은선, 이주현, 임경수, 김영문	
	북일학원	학교 운영	김중희	김승연, 최상순, 이정표, 홍기준, 안홍숙, 남영선, 강익수	김승연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한화	한화문화재단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운영 사업	김승연, 김태영	김승연, 정귀호, 김성수, 김성호, 최창조, 이일우	
	연강재단	학술지원사업, 문예진흥사업	박용현, 박용성, 박용근,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엔 진, 두산인프라코어	박용현, 박용근, 송인성, 송하경, 홍두기, 성상철, 현홍주, 최종학, 박영주, 한영재	박용현, 박용근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두산					

〈표 III-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금호 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 사업(음 악, 미술, 영화), 자선사업, 표창 사업	김성식, 금호리조트, 금호 타워, 금호터미널, 대한 통운, 아스공항,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시아나에바카스, 아시아 나항공, 에어부산, 세라젬, 케이티렌탈, 한국복합물류	박삼구, 박강자, 김영호, 이철주, 현민자, 신현택, 황영성, 장혜원, 최종률, 신수정, 김태호	박삼구, 박강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STX복지재단	1. 소외계층지원사업 2. 산업재해근로자지원사업 3. 지역친화사업	STX조선해양, STX메탈, STX엔진, STX중공업, 세진산업	강덕수, 김현태, 박진혜, 허정도, 박종대, 김정기, 최충경	강덕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STX	STX장학재단	1. 국내장학금 2. 해외장학금 3. 학술지원금	강덕수, STX엔진, STX마린 서비스	강덕수, 김병일, 문휘창, 신종계, 이우성, 조영호, 송정희, 민은기	강덕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IS			보유 공익법인 없음		
CJ	CJ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공연기획 및 공연시설물 운영사업,	CJ오쇼핑, CJ제일제당, CJ프레스웨이, CJ CGV, CJ E&M, CJ지엘에스, CJ헬로비전	이재현, 안성기, 임진모, 설도윤, 정원영, 박찬욱	이재현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CJ나눔재단	불우이웃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 원사업, 농어촌주민 지원사업	CJ CGV, 문광부, 로즈코리 아, 이재현, 한국관광공사, CJ푸드빌, CJ오쇼핑, CJ E&M, 김성훈 등	이재현, 박금주, 김성구, 사석원, 이봉주, 안철수, 나경원	이재현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신세계	사회복지법인 어 린이재단	어린이의 생존지원, 보호지원, 발달지원, 권리지원 사업 등	이마트, 신세계 임직원, 이 마트 임직원, 신세계백화 점마산점,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등 다수	박창래, 최이우, 지훈상, 김병재, 송경애, 김재철, 신승일, 홍완기, 안서규, 오정희, 나경원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동부	동부문화재단	학술, 장학	김준기, 동부제철, 동부화 재, 동부CNI, 동부건설, 동 부제철, 동부증권, 동부하 이텍, 동부건설	김형배, 홍관의, 한신력, 강경식, 오병화, 송장호	김형배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재단법인영문	학술, 장학	김문희, 현정은, 현일선, 현지선, 현영원	김문희, 최철호, 이문수, 박정숙, 최인영	김문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현대	용문학원	교육	-	김문희, 유승지, 이인원, 이광용, 류길재, 하홍권	김문희, 유승지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대림학원	학교법인대림학원, 대림대학, 안양여자고등학교, 안양여자중학교	이준용	이정국, 김인수, 김홍기, 김영완, 이혜옥, 김태근	
대림	대림문화재단	문화	대림산업, 대림테크노파크 업, 고려개발, 대림홍산, 대림엔지니어링, 대림자동 차공업, 대림홍산, 대림코 퍼레이션, 오라관광, 서울 증권, 대한상호신용금고, 대림요업, 현대해상화재보 험, 태진인터내셔널, 동부 생명	이준용, 이혜옥, 이주연, 김명환, 김신, 민희식, 신유진, 조수용, 손한짐, 최정환	이준용, 이혜옥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우정학원	교육	(주)영주텍, 진라남도	이중근, 김우경, 송성규, 이기춘, 김재홍, 강영진	이중근, 김재홍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KCC			보유 공익법인 없음		

〈표 III-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학술, 장학	동국제강, 포항도금강판, 국제통운, 연합철강, 동국통운, 유니온스틸	추경석, 김무성, 장재룡, 유영구, 장세주, 정영일	
효성	동양학원	학교운영	조흥제, 효성	조석래, 안태완, 배기은, 이경훈, 이상원, 이상운, 문탁진, 송기원	조석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OCI	송도학원	교육사업	미기재	이수영, 장명희, 윤승구, 조진형, 박상수, 이종말, 민홍기	이수영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현대백화점	송암문화재단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장학사업	OCI, 삼광유리공업, 유니드, 유니온, 이회림 등	이수영, 지용택, 정태기, 이원복, 이세중	이수영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한진중공업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정지선, 송정운, 정몽근, 현대소평, 현대홈쇼핑	정지선, 경청호, 김준호, 남상만, 박기백, 어홍조, 이형오, 정혜경, 제갈음우, 현기춘	
웅진	재단법인 웅진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및 지원사업, 취업난치성 환아 지원사업 등	보유 공익법인 없음 웅진씽크빅, 윤석금, 웅진코웨이,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신현웅, 이기웅, 이춘호, 이경희, 이혜경, 이영조, 김도한	
코오롱	오온문화재단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	이원만, 코오롱페션머티리얼, 코오롱아이넷, 코오롱플라스틱	이동찬, 김형권, 이필영, 이문조, 최운지, 나공무, 황일청, 강관, 김만기, 김홍기, 이성균	이동찬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마산코오롱강학회	장학금 지급사업	코오롱건설	김원규, 김종훈, 박미화, 정기권, 정은숙, 최덕수, 하중호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영풍	경원 문화재단	장학금 지급사업	최창길, 최창길, 고려아연	유중근, 인홍시, 이광희, 강철희, 전숙자, 김용학	유중근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영풍 문화재단	장학금 지급사업	영풍, 영풍광업, 고려아연, 장병희, 최기호	장형진, 최창근, 조병오, 이두순, 최영철, 최순철, 공명식, 박원철, 이재구, 김용덕	장형진, 최창근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현대산업 개발	포니정장학재단	국내외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정몽규, 정상영, 현대산업 개발, 현대EP 등	김진현, 정몽규, 이양섭, 김철수, 박용석	
	설원량문화재단	미술관을 통한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문화예술, 예술계학생장학금 지급	삼양금속, 백승호, 설원봉	양귀애, 김재혁, 최혁, 오병인, 염계주	양귀애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대한전선	인송문화재단	장학금 지급사업, 교육기관지원 사업, 연구비지원, 교육지원사업	설경동, 양귀애	양귀애, 염계주, 유병인, 권운희, 강형창	양귀애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서남재단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지원사 업 3. 유아교육사업 4.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5. 미술 전시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	동양시멘트	이관희, 김정래, 정의숙, 신창동, 장화진, 박명희	이관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미래에셋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장학사업, 공모사업, 지원사업, 결연사업, 운영사업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 문, 미래에셋캐피탈, 대신 증권, 박현주, 미래에셋증 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 래에셋생명, 한상춘	변형윤, 윤원배, 이필상, 김승유, 장용성, 최현만	변형윤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미래에셋교육재단	학술, 장학	박현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노경옥, 이석봉, 최미준, 엄미영	박현주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문화	김수희, 하이트맥주, 박문 덕, 박문효, 박순혜, 진로, 하이트진로	박문덕, 김명규, 임병도, 송영기, 김진한	박문덕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대성	대성해강과학 문화재단	학술, 장학	대성홀딩스, 대성글로벌네트웍, 경북도시가스	김영훈, 정근모, 정길생, 오세정, 신희택	김영훈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세아 세아해암학술 장학재단	학술, 장학	이운형, 이종덕, 세아제강, 강남도시가스, 세아특수강, 세아홀딩스, 한국번디, 세아에스, 해덕기업, 해양도시가스, 한국주철관, PSP공제회, 세명개발, 해양건설	이운형, 유영구, 정구현, 윤영섭, 이상렬	이운형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한국투자 금융	동원육영재단	장학금지급, 아동도서지원사업 등	미지	김재철, 박인구, 오동빈, 강석진, 이종길, 최순자, 최종태, 김주원, 김왕복, 강병원, 신상철	김재철, 박인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선화예술문화재단	문화	태광산업,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이신애, 정종섭, 정병진, 채남주, 이승현	이신애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태광	학교법인일주학원	교육(세화고, 세화여고, 세화여중 3개교 운영법인)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신애, 이호진, 이화동, 유석기, 박정신, 채남주, 전신길, 이동국	이신애, 이호진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일주학술문화재단	1. 장학금지급사업 2. 연구비지급사업 3. 교육기관지원사업 4. 영상조형미술관운영및창작활동지원사업 5. 영상문화 사업지원사업	이임용	이신애, 김진배, 이재현, 신흥균, 김석준	이신애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유진	소사 유진 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	유재필, 유경선	유경선, 김진용, 유광섭, 이종상, 주영민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포항공과대학교	교육업	교육업	포스코파워, 포스코켄텍, 포스코건설, 포스틸 등	정준양, 윤덕용, 안병영, 권옥현, 최영우, 정인상, 홍유신, 최종태, 손봉락, 김용민, 안철수, 이문석	정준양과 최종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포스코교육재단	포철고, 포철공고, 포철중, 포철 동초, 포철서초, 포철지초, 포철 유, 광철고, 광철중, 광철초, 광 철남초, 광철유 충 고등학교등 12개 학교 운영	포스코, 일신혜은	이대공, 도승희, 박찬모, 서범석, 이광운, 이화일, 예병윤, 제갈태일, 조규 항, 조성발, 최병욱, 최 종태	이대공, 이화일, 최 종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포스코청암재단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 및 산업연구 지원 사업 등	포스코, 포스코ICT, 포스코건설, 포스틸 등	정준양, 이우인, 김동건, 김병현, 문용린, 민경찬, 박철, 신우중호, 손지열, 안택주, 오연진, 이기수, 이배용, 이채욱	정준양, 이우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KT	포스코대송이주민 장학회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노인 위 로금 지급사업 등	포스코	오성효, 이춘술, 성두화, 구석구, 배용수, 강호석, 박원길, 박만철, 김해주, 황창문, 안관평	
	KT문화재단	정보통신문화창달을 위한 공익 사업	KT	박부권, 김광수, 성동규, 최재근, 권사일, 민태기, 성동규	최재근, 권사일, 민 태기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대우조선 해양	대우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대우중공업, 대우학원, 지광열	윤원석, 한용호, 정주호, 임효빈, 유기범, 추호석, 김태구, 진주범, 강병호, 장병주, 이영현	
하이닉스			보유 공익법인 없음		

포스코

대우조선
해양

하이닉스

〈표 III-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대우건설			보유 공익법인 없음		
S-Oil	미래우학재단	1.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등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학습 지도 및 인성지도를 위한 지원 2.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어지게 하기 위하여 타법인(정부 기관 포함) 등에 위탁사업을 위 선적으로 고려 3. 그 밖에 이 법 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김혜동, 노연상, 조남규, 이완주, 조장연, 신진규, 김찬욱, 이봉주, 이상범, 문석호, 서갑수, 이장무, 김윤수, 문창진, 홍동표, 유윤철, 박찬민, 송광용, 이두원, 우무상, 김신동, 이용수	
한국GM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사회복지	마크 이카몬	홍영복, 최원식, 정규형, 이필주, 이종광, 윤승준, 심감섭, 박동석	
홈플러스	홈플러스 이퍼란재단	환경 및 기후변화, 나눔, 문화 관 련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우리 사회의 친환경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홈플러스, 이성한	이성한, 이경숙, 윤은기, 김재범, 김종훈, 김승남, 전성철, 최운실	이성한은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KT&G	케이티엔지 복지재단 케이티엔지장학재 단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학술, 장학	KT&G KT&G	김재홍, 김신우, 김용환, 박기정, 김호섭, 김승철, 김성수	
한국토지 주택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곽영관, 안석교, 황용승, 오준호, 최문근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한국전력 공사	한전의료재단한일 병원	지역주민진료 및 전국주요도시 순회진료	한국전력공사	김중겸, 김은수, 조인국, 김종호, 이원창, 정진엽, 강관혜	
	한국전력학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운영	미기재	김중겸, 변준연, 조인국, 김종호, 하광을, 강희태, 박재민	
	한국전력국제원자 력대학원	교육업	한국전력기술, 한전기술, 한전KPS 등	김중겸, 박노석, 정근모, 김태유, 박근철, 강재열, 이배수, 서창록, 이정민, 이두희, 변준연, 이태호	김중겸, 이배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음
	기초전력연구원	전력산업 관련 기초연구, 연구시 설대여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	김용권, 김중겸, 김문덕, 김종신, 권세혁, 조보형, 양해원, 홍순찬, 구자균, 최진용, 김호용, 김권태, 신명철, 조현문, 장재원, 박기주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장학재단	학술, 장학	한국도로공사, 길사랑장학 사업단 등	최봉환, 정해수, 박영철, 최승규, 김용진, 홍종균, 박래선, 김길생, 오병삼, 박문규, 이신재, 서종식	
한국가스 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철도 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석유 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표 Ⅲ-1〉의 계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현황	출연자	이사진 구성 ¹⁾	비고
인천 국제 공 항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주: 1) 국제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상에서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에서 기타는 제외하고 이사만 기재하였음
 자료: 국제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https://npointo.nts.go.kr/ndp/index_dist.html)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주식 출현 현황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분보유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확인하였음
 - 자료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을 사용하였음

- 8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은 총 30개임
 - 삼성의 호암재단, 삼성언론재단, 삼성의료재단, LG의 LG복지재단, LG상남언론재단, LG상록재단, 롯데 복지재단, 현대중공업의 아산정책연구원, 현대학원, 현대오일뱅크장학사업회, GS의 GS칼텍스재단, 한화의 한화문화재단, 신세계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대림의 대림문화재단, 현대백화점의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코오롱의 마산코오롱장학회, 영풍 문화재단, 미래에셋의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에셋육영재단, 대성의 대성해강과학문화재단, 태광의 선화예술문화재단, 유진의 소사유진복지재단, 포스코의 포스코대송이주민장학회, 현대산업개발의 포니정장학재단, 대우조선해양의 대우장학재단, 한국GM의 한국지엠한마음재단, 홈플러스의 홈플러스이파란재단,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학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이 있음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5개의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익법인은 보통 1~2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21개임
 - 삼성의 경우 4개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보유 계열사가 11개, LG는 2개의 공익법인이 5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의 롯데장학재단과 동부의 동부문화재단은 7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계열사 주식 외에도 순수한 투자 목적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도 일부 있었으나,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상 중요성은 없음

- 아래의 <표 Ⅲ-2>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각 공익법인별 보유 주식명, 주식의 장부가액, 지분비율, 총자산가액 대비 계열사 주식가액의 비율, 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동일계열사 총주식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였음
 - 배당수입은 계열사 보유주식의 배당수입의 합계를 작성하였고, 우선주의 배당수입은 제외하였음
 - 총수입금액은 국세청 공시자료의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에서 소득금액과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를 합산하였음

〈표 Ⅲ-2〉의 계속

상호출자계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보유주식명	주식 장부가액	출연 비율	동일계열사 총자산가액 ¹⁾ (a)	총자산가액 (b)	계열사주식 보유비율 (c=a/b)	배당수입 ²⁾ (d)	배당 수익률 (e=d/a)	총수입금액 ³⁾ (f)	배당구성 비율 (g=d/f)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제과	35,268,928	8.69	42,352,191	158,708,970	26.69	1,090,429	2.57	5,635,886	19.35	
		롯데칠성-보	556,738	6.28								
		롯데칠성-우	111,712	5.12								
		대흥기획	42,000	21.0								
		롯데정보통신	850,230	0.94								
		롯데역사	960,000	5.33								
		롯데케피탈	990,000	0.51								
		롯데제과	2,123,589	4.46								
		*삼광유리	249,893	0.37								
		*BS금융지주	36,902,255	3.08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 복지재단	-	-	-	-	-	-	-	-	-	-	
		롯데쇼핑	17,000,000	0.16	17,000,000	58,521,239	29.05	71,832	0.42	1,620,422	4.43	
현대중공업	아산사회복지 재단	현대중공업	493,440,000	2.53	503,072,000	1,653,979,824	30.42	13,741,000	2.73	1,583,719,297	0.87	
		현대미포조선	9,632,000	0.43								
		현대중공업	126,504,652	0.65								
		*현대백화점	3,881,356	0.10								
GS	아산정책 연구원 현대학원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 남촌재단 GS칼텍스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건설	25,308,218	0.52	25,308,218	39,708,218	63.74	263,760	1.04	825,360	31.96	

〈표 Ⅲ-2〉의 계속

상호출자계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보유주식명	주식 장부가액	출연 비율	동일계열사 총주식가액 ¹⁾ (a)	총자산가액 (b)	계열사주식 보유비율 (c=a/b)	배당수입 ²⁾ (d)	배당 수익률 (e=d/a)	총수입금액 ³⁾ (f)	배당구성 비율 (g=d/f)
한화	북일학원	한화	34,166,827	1.82							
		한화케미칼	2,972,597	0.18	38,196,859	93,668,977	40.78	935,397	2.45	4,400,173	21.26
		한화호텔&리조트	1,057,435	0.42							
두산	연강재단	-									
		두산	18,508,769	2.24							
		두산중공업	24,847	0.001							
		두산건설	6,231,912	0.32							
		오리콤	587,188	0.64							
		두산1(우)	20,645,116	15.58	25,352,715	128,926,595	19.66	1,282,171	5.06	10,052,987	0.13
		두산2(우)	8,645,860	39.63							
*하나금융지주	2,483,384	0.04									
금호 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KB금융지주	128,566	0.0007							
		*한국경제신문	28,510	0.02							
		금호석유화학	13,643,410	1.91							
		*KDB생명보험	11,804,754	0.28	13,643,410	54,702,775	24.94	485,060	3.56	3,606,974	0.13
		*서울신문	1,247,246	3.00							
STX	STX복지재단	STX	674,612	0.10							
		STX조선해양	6,418	0.0007	1,557,048	11,221,658	13.87	865,510	55.59	1,419,318	0.61
		STX중공업	374,810	0.24							
		포스텍	501,208	8.29							
LS	STX강화재단	STX	674,612	0.10							
		포스텍	2,100,000	1.24	3,302,468	19,054,297	17.33	147,028	4.45	1,060,583	0.14
		STX조선해양	527,856	0.06							
보유 공익법인 없음											

〈표 III-2〉의 계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보유주식명	주식장부가액	출연비율	동일계열사 총자산가액 ¹⁾ (a)	총자산가액 (b)	계열사주식 보유비율 (c=a/b)	배당수입 ²⁾ (d)	배당 수익률 (e=d/a)	총수입금액 ³⁾ (f)	배당구성 비율 (g=d/f)	
CJ	CJ문화재단	CJ	9,677,437	0.44	11,948,275	32,542,807	36.72	131,921	1.10	3,017,284	4.37	
		CJ제일제당	2,270,838	0.06								
		CJ	12,628,308	0.57	21,414,923	27,550,732	77.73	252,607	1.18	7,965,871	3.17	
신세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동부하이텍	706,649	0.17								
동부	동부문화재단	동부화재	8,763,528	5.00								
		동부상호저축은행	3,424,040	19.95								
		동부제철	3,578,904	2.24	31,022,552	40,005,739	77.54	4,025,197	12.98	4,515,994	0.89	
		동부건설	4,151,268	5.00								
		동부증권	3,185,667	1.87								
		동부CNI	7,212,496	5.00								
		현대증권	395,592	0.01								
현대	재단법인영문 용문학회	현대상신	30,021,652	1.13	60,024,896	69,845,116	85.94	1,109,932	1.85	1,841,461	0.60	
		현대엘리베이터	29,607,652	3.32								
		현대상신	1,526,232	0.05	1,526,232	64,338,399	2.37	0	0.00	1,055,774	0.00	
		*(주)미래엔컬처	1,375	0.01								
대림	대림학원 대림문화재단	대림산업	55,366,794	1.26								
		고려개발	288,710	0.55								
		삼호	599,724	1.64	56,255,228	281,750,796	19.97	43,942	0.08	58,872,498	0.07	
		대림산업(우) *스카이라이프	8,251,378 1,902,026	7.61 0.17								

〈표 Ⅲ-2〉의 계속

상호출자계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보유주식명	주식 장부가액	출연 비율	동일계열사 총주식가액 ¹⁾ (a)	총자산가액 (b)	계열사주식 보유비율 (c=a/b)	배당수입 ²⁾ (d)	배당 수익률 (e=d/a)	총수입금액 ³⁾ (f)	배당구성 비율 (g=d/f)
대한전선	실원량 문화재단	옵토메직	776,250	0.47	776,250	8,801,186	0.11	0	0.00	315,317	0.00
		대한전선	704,411	0.11	1,032,449	14,950,316	6.91	0	0.00	487,257	0.00
		대한제당	328,038	1.26	5,080,199	15,657,686	32.44	0	0.00	1,876,686	0.00
동양	서남재단	동양	5,080,199	0.51	5,080,199	15,657,686	32.44	0	0.00	1,876,686	0.00
		-	-	-	-	-	-	-	-	-	-
미래에셋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	-	-	-	-	-	-	-	-	-
		-	-	-	-	-	-	-	-	-	-
하이트진로	하이트 문화재단	하이트진로 홀딩스(보)	91,355,576	7.54	91,355,576	97,075,899	94.11	0	0.00	311,406	0.00
		하이트진로 홀딩스(우)	543,272	2.13	543,272	97,075,899	94.11	0	0.00	311,406	0.00
		하이트진로(우)	430,355	2.12	430,355	97,075,899	94.11	0	0.00	311,406	0.00
대성	대성해강과학 문화재단	-	-	-	-	-	-	-	-	-	-
		-	-	-	-	-	-	-	-	-	-
세아	세아해임학술 장학재단	세아제강	1,965,979	2.71	1,965,979	10,751,349	24.40	374,413	14.27	680,097	0.55
		세아홀딩스	657,820	1.86	2,623,799	10,751,349	24.40	374,413	14.27	680,097	0.55
		*한국주철관공업 *금호타이어	468,142 293,774	0.77 0.03	2,623,799	10,751,349	24.40	374,413	14.27	680,097	0.55
한국투자 금융	동원육영재단	한국투자금융지주	1,544,875	0.16	1,544,875	39,730,547	3.89	0	0.00	1,547,588	0.00
		동원엔터프라이즈 *하나금융지주	9,552,391 2,902,800	5.01 0.12	1,544,875	39,730,547	3.89	0	0.00	1,547,588	0.00

〈표 Ⅲ-2〉의 계속

상호출자계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보유주식명	주식 장부가액	출연 비율	동일계열사 총자산가액 ¹⁾ (a)	총자산가액 (b)	계열사주식 보유비율 (c=a/b)	배당수입 ²⁾ (d)	배당 수익률 (e=d/a)	총수입금액 ³⁾ (f)	배당구성 비율 (g=d/f)	
KT 대우조선 해양	KT문화재단	KT	594,214	0.01	594,214	11,646,817	5.10	40,170	6.76	398,958	10.01	
	대우장학재단	-	-	-	-	-	-	-	-	-	-	
하이닉스	보유 공익법인 없음											
대우건설	보유 공익법인 없음											
S-OIL	미래우학재단	S-OIL	41,314,700	0.37	41,314,700	164,740,280	25.08	0	0.00	49,727,066	0.00	
		S-OIL(우)	38,938,626	17.41	-	-	-	-	-	-	-	-
		*KT	3,743,250	0.04	-	-	-	-	-	-	-	-
		*STX엔진	1,224,243	0.32	-	-	-	-	-	-	-	-
		*일진전기	5,179,416	2.30	-	-	-	-	-	-	-	-
		*알엔엘바이오	9,674,022	2.31	-	-	-	-	-	-	-	-
		*알엔엘삼미	796,361	4.33	-	-	-	-	-	-	-	-
		*일진미리얼즈	12,635,505	1.90	-	-	-	-	-	-	-	-
		*STX	12,819,010	1.85	-	-	-	-	-	-	-	-
		*에너토크	1,767,151	4.01	-	-	-	-	-	-	-	-
한국GM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재룡전기	1,850,121	4.51	-	-	-	-	-	-	-	
		*일진홀딩스	2,259,801	2.16	-	-	-	-	-	-	-	
		*삼성전기	11,281,887	0.19	-	-	-	-	-	-	-	
홈플러스	케이티엔지 복지재단	-	-	-	-	-	-	-	-	-		
KT&G		248,914,118	2.23	248,914,118	253,914,539	98.03	9,173,739	3.69	14,313,102	0.64		
KT&G	케이티엔지 장학재단	KT&G	32,560,000	0.29	32,560,000	47,461,153	68.6	900,000	2.76	1,408,309	0.64	

〈표 Ⅲ-2〉의 계속

상호출자계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보유주식명	주식 장부가액	출연 비율	동일계열사 총주식가액 ¹⁾ (a)	총자산가액 (b)	계열사주식 보유비율 (c=a/b)	배당수입 ²⁾ (d)	배당 수익률 (e=d/a)	총수입금액 ³⁾ (f)	배당구성 비율 (g=d/f)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전의료재단	-									
	한일병원										
한국전력 공사	한국전력학원	-									
	한국전력국제 원자력대학원	-									
한국도로 공사	기초전력 연구원	*지피티	25,000	13.89	-						
	고속도로장학 재단	길사랑장학사업단	273,325	65.0	273,325	9,833,601	2.77	100	0.04	1,023,795	0.00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가스 공사											
한국철도 공사											
한국석유 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주: 1) 동일계열사 총주식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였음
 2) 계열사 보유주식의 배당수입의 합계이며, 우선주의 배당수입은 제외하였음
 3) 총수입금액은 공시자료의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에서 소득금액과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를 합산한 것임
 4) ‘*’ 는 계열사 아님
 5) ‘.’ 는 주식 없음

자료: 국제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https://npointo.nts.go.kr/ndp/index_dist.html)

3. 공익법인별 배당수익률과 배당구성비율 현황

- 아래의 <표 Ⅲ-3>은 공익법인별 배당수익률과 배당구성비율 현황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 30개는 제외하고 주식을 보유한 55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표 Ⅲ-2>의 자료를 정리함 것임
- 주식을 보유한 55개의 공익법인 중에서 배당수입(계열사 보유주식의 배당수입의 합계로 우선주의 배당수입은 제외)을 동일계열사 총주식가액¹³⁾(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으로 나눈 배당수익률이 '0'인 곳이 13개 법인이며, 1% 미만의 낮은 배당을 받는 곳도 6곳으로 조사됨
- 배당수입(계열사 보유주식의 배당수입의 합계로 우선주의 배당수입은 제외)을 공시자료상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출연금)을 합산한 총소득금액으로 나눈 배당구성비율의 경우에는 1% 미만인 곳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5개 법인으로 도출되었음

<표 Ⅲ-3> 공익법인별 배당수익률과 배당구성비율 현황

(단위: %)

공익법인	배당수익률	공익법인	배당구성비율
송도학원	65.00	재단법인 양현	80.53
STX복지재단	55.59	남존재단	31.96
삼성문화재단	38.75	송원문화재단	29.76
송암문화재단	32.98	LG연암학원	25.87
학교법인 일주학원	20.48	경원문화재단	24.93
경원 문화재단	16.22	송암문화재단	23.35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14.27	북일학원	21.26
동부문화재단	12.98	롯데장학재단	19.35
LG연암학원	11.45	KT문화재단	10.01
LG연암문화재단	10.95	송도학원	8.74

13) 총주식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가액(시가)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익법인간 배당수익률을 비교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함

〈표 Ⅲ-3〉의 계속

공익법인	배당수익률	공익법인	배당구성비율
삼성복지재단	10.64	일우재단	7.70
삼성꿈장학재단	9.65	포스코교육재단	6.13
포스코교육재단	9.01	학교법인일주학원	5.72
한국고등교육재단	7.68	LG연암문화재단	4.44
KT문화재단	6.76	롯데삼동복지재단	4.43
연강재단	5.06	CJ문화재단	4.37
STX장학재단	4.45	CJ나눔재단	3.17
정석학원	4.20	포스코청암재단	3.00
인하학원	4.02	포항공과대학교	2.34
일우재단	3.84	정석물류학술재단	1.94
삼성생명공익재단	3.79	정석학원	0.92
케이티엔지복지재단	3.69	동부문화재단	0.89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3.56	아산사회복지재단	0.87
재단법인 양현	3.38	케이티엔지복지재단	0.64
케이티엔지장학재단	2.76	케이티엔지장학재단	0.64
아산사회복지재단	2.73	STX복지재단	0.61
롯데장학재단	2.57	재단법인영문	0.60
북일학원	2.45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0.55
포스코청암재단	1.99	삼성문화재단	0.49
송원문화재단	1.98	아산나눔재단	0.40
동양학원	1.88	인하학원	0.38
재단법인영문	1.85	동양학원	0.35
아산나눔재단	1.56	삼성복지재단	0.18
CJ나눔재단	1.18	STX장학재단	0.14
CJ문화재단	1.10	연강재단	0.13
남존재단	1.04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0.13
현대차 정몽구재단	0.78	대림학원	0.07
포항공과대학교	0.59	삼성꿈장학재단	0.04
롯데삼동복지재단	0.42	한국고등교육재단	0.01
정석물류학술재단	0.16	현대차 정몽구 재단	0.00
대림학원	0.08	행복나눔재단	0.00
고속도로장학재단	0.04	용문학원	0.00
행복나눔재단	0.00	우정학원	0.00

〈표 Ⅲ-3〉의 계속

공익법인	배당수익률	공익법인	배당구성비율
용문학원	0.00	재단법인 응진	0.00
우정학원	0.00	오운 문화재단	0.00
재단법인 응진	0.00	설원량문화재단	0.00
오운 문화재단	0.00	인송문화재단	0.00
설원량문화재단	0.00	서남재단	0.00
인송문화재단	0.00	하이트문화재단	0.00
서남재단	0.00	동원육영재단	0.00
하이트문화재단	0.00	일주학술문화재단	0.00
동원육영재단	0.00	미래우학재단	0.00
일주학술문화재단	0.00	고속도로장학재단	0.00
기초전력연구원	0.00	기초전력연구원	0.00
미래우학재단	0.00	삼성생명공익재단	-3.7

4. 계열사별 성실공익법인 판정 및 기준준수 여부

- 〈표 Ⅲ-4〉는 계열사별 성실공익법인 판정 및 기준준수 여부의 조사로 각 공익법인별로 공시자료 및 공시담당자와의 전화설문을 통해 작성되었음
 - 성실공익법인 요건 5가지를 기초로 전화설문을 하였으며, 요건 중에서 전용계좌 개설, 외부감사, 운용소득 목적사업 80% 이상 의무사용은 전화설문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토대로 기재하였음¹⁴⁾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에서 공시의무와 특수관계 이사비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요건임

14) 상증령13⑤ ‘성실공익법인’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한다. ①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할 것 ② 공익법인 등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③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것 ④ 해당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⑤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상증법」 제48조 제9항을 보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주식 보유 30%, 50% 제한을 받지 않음(표에서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였음)
 -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총자산가액 대비 50%, 그렇지 않으면 총자산가액 대비 30%까지만 계열사 주식 보유가 가능함

-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판단된 곳은 총 44개로 절반에 가까운 공익법인이 해당되었음
 - 보통 외부감사를 받지 않거나, 운용소득 목적사업의무사용 80% 사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 이사비율이 초과되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았음

- 전화설문 및 공문 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 주식보유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 몇몇 공익법인의 보유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롯데의 롯데장학재단은 보유주식 중 대흥기획의 지분율이 21.0%이나, 96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분으로서 문제되지 않음
 - 현대중공업의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계열사주식 장부가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2%이나 동 주식 장부가액은 공정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이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30%를 넘지 않음(「상증법시행령」 제38조 제13항)
 - 'A' 기업집단의 '가' 공익법인은 전화설문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을 가정할 때 총자산 대비 계열사주식 보유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B' 기업집단의 '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XXX 주식의 총보유주식은 19.95%임
 - 이 중에서 92년 1월, 3월 출연으로 10만주와 24만주를 취득하였고, 92년 4월과 98년 12월 무상증자를 통해 58,994주, 433,388주를 보유한 상태로 현재 총발생주식 대비 보유비율은 19.95%임
 - 'C' 기업집단의 '다' 공익법인은 XXX 주식을 9.78%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였으

나, 전화설문상 잘못 공시되어 실제 보유비율은 1.96%라고 답변하였음

- 'D'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자들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주식보유의 기준 초과 가능성이 다수 있었음
 - '라' 공익법인은 자체 XXX 주식비율은 5% 미만이나 여타 'D'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한 XXX 주식의 총소유비율은 5% 초과로서, 출연자들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상증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나목)
 - '마' 공익법인과 전화설문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마' 공익법인 자체 XXX 주식비율은 5% 미만이나 여타 'D'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한 XXX 주식의 총소유비율은 5% 초과로서 출연자들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상증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나목)
 - '바' 공익법인은 자체 XXX 주식비율은 5% 미만이나 기타 'D'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한 XXX 주식의 총소유비율은 5% 초과로서 출연자들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상증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나목)
 - '사'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중 000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고 함

-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E' 기업집단의 '아' 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고유목적 사용비율이 항상 80%를 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F' 기업집단의 '자' 공익법인과 '차' 공익법인, 'F' 기업집단의 '카' 공익법인, 'G' 기업집단의 '타'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직접고유목적 사용비율이 70%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고 함

- 'H' 기업집단의 '파'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이사비율이 6분의 2로 성실공익법인에 해

당되지 않으며, 'I' 기업집단의 '하' 공익법인은 특수관계 이사비율이 국세청 공시자료에는 10분의 3이라고 하였지만, 전화설문상 공시자료가 잘못 기재되어 실제로는 10분의 2라고 함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상증법 50③) 이행 여부가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 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임
 - 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음
 - 삼성의 삼성언론재단의 자산총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유진의 수사유진사회복지재단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이어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로 효성의 동양학원, KT의 KT문화재단, 대우조선해양의 대우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교와 전화설문 연결 및 이메일 교신이 되지 않아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판단 시 보수적으로 접근하였음

〈표 III-4〉 계열사별 성실공익법인 지정 및 기준준수 여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익법인	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운용소득 목적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삼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삼성생명 공익재단	○	○	○ (삼정)	○	1/7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¹⁾
	삼성문화재단	○	○	○ (안진)	○	1/10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삼성복지재단	○	○	○ (안진)	○	1/6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삼성꿈장학재단	○	○	○ (삼정)	○	1/10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삼성	호암재단	○	○	○ (안진)	○	0/6	○	- ²⁾	-
	삼성인론재단	○	○	×	○	0/10	×	-	-
	삼성의료재단	○	○	○ (한영)	○	0/10	○	-	-
현대자동차	현대차 정몽구 재단	○	○	○ (삼일)	○	5분의 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한국고등교육 재단	○	○	○ (삼덕)	○	2/10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SK	행복나눔재단	○	○	○ (계일)	○	2/6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표 Ⅲ-4〉의 계속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의법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운용소득 포괄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의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LG	LG연암문화재단	○	○	×	×	1/7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LG연암학원	○	○	×	×	2/8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LG복지재단	○	○	×	×	5분의 1	×	-	-
	LG상남인문재단	○	○	×	○	0/5	×	-	-
	LG상록재단	○	○	×	×	1/6	×	-	-
롯데	롯데장학재단	○	○	○ (안진)	○	1/8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롯데복지재단	○	○	○ (안진)	○	2/10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롯데삼동 복지재단	○	○	○ (한영)	×	1/7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아산사회복지 재단	○	○	×	○	1/15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아산나눔재단	○	○	○ (안진)	○	1/9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현대중공업	아산정책연구원	○	○	○ (환율)	○	1/13	○	-	-
	현대학원	○	○	×	○	0/7	×	-	-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	○	○	×	○	1/7	×	-	-

〈표 III-4〉의 계속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은행소득 포좌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GS	남촌재단	○	○	○ (감사반 제374호)	○	1/6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GS칼텍스재단	○	○	○ (삼정)	○	2/12	○	-	-
	일우재단	○	○	○ (삼정)	×	5분의 1	×	대한항공 5.24%	충족 (50% 이하)
한진	인하학원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3/12	×	대한항공 5.24%	충족 (30% 이하)
	정석학원	○	○	×	○	2/11	×	대한항공 5.24%	충족 (30% 이하)
	정석물류 학술재단	○	○	○ (삼정)	○	5분의 1	○	한진관광 11.69%	해당없음
	재단법인 양현	○	○	○ (위드)	○	5분의 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한화	북일학원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1/7	?	충족 (5% 이하)	알 수 없음 (40.78%)
	한화문화재단	○	○	×	○	1/6	×	-	-
두산	연강재단	○	○	○ (삼일)	○	2/10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금호 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	○	○ (삼정)	○	2/1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표 Ⅲ-4〉의 계속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연용소득 포좌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STX	STX복지재단	○	○	○ (안진)	○	1/7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STX장학재단	○	○	○ (성도)	○	1/8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LS	보유 공익법인 없음								
CJ	CJ문화재단	○	○	○ (삼일)	○	1/6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CJ나눔재단	○	○	○ (삼정)	○	1/7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신세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	○ (삼일)	○	0/11	○	-	-
	동부문화재단	○	○	○ (원)	○	1/6	○	동부상호저축 은행 19.95%	해당없음
현대	재단법인영문	○	○	○ (삼일)	○	5분의 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용문학원	○	○	×	○	2/6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대림	대림학원	○	○	○ (안진)	○	0/6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대림문화재단	○	○	○ (안진)	○	2/10	×	-	-
부영	우정학원	○	○	×	○	2/6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표 III-4〉의 계속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운용소득 목적사업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KCC									
보유 공익법인 없음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	○	○ (부경)	○	0/6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효성	동양학원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1/8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송도학원	○	○	×	○	1/7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OCI	송암문화재단	○	○	×	○	5분의 1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	○	○	○ (세립)	○	1/10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진중공업									
보유 공익법인 없음									
웅진	재단법인 웅진	○	○	○ (삼영)	○	0/7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	○	×	○	1/11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마산코오롱 장학회	○	○	×	○	0/7	×	해당없음	해당없음
영풍	경원문화재단	○	○	○ (안진)	○	1/6	○	유미개발 25.73%	해당없음
	영풍문화재단	○	○	×	○	2/10	×	-	해당없음
현대산업개발	포니정장학재단	○	○	○ (삼일)	○	5분의 1	○	-	해당없음

〈표 Ⅲ-4〉의 계속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익법인	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연용소득 포좌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대한진진	설원량문화재단	○	○	○	×	5분의 1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인송문화재단	○	○	○	×	5분의 1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동양	서남재단	○	○	○ (삼덕)	○	5분의 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미래에셋	미래에셋 박원주재단	○	○	○ (태영)	○	0/6	○	-	-
	미래에셋 육영재단	○	○	○ (태영)	○	5분의 1	○	-	-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	○	○ (김춘길 제409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	5분의 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대성	대성해강 과학문화재단	○	○	×	○	5분의 1	×	-	-
세아	세아해암 학술장학재단	○	○	○ (한영)	×	5분의 1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한국투자 금융	동원육영재단	○	○	○ (세빛)	○	2/1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표 III-4〉의 계속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연속사업 목적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태광	선화예술 문화재단	○	○	○ (안진)	○	5분의 1	○	-	-
	학교법인 일주학원	○	○	○ (안진)	○	2/8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일주학술 문화재단	○	○	○ (안진)	○	5분의 1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유진	소사유진 사회복지재단	○	×	×	×	5분의 1	×	-	해당없음
	포항공과대학교	○	○	○ (삼정)	○	2/12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포스코	포스코교육재단	○	○	○ (삼정)	○	3/12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포스코청암재단	○	○	○ (삼정)	○	2/14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포스코대송 이주민장학회	○	○	×	○	0/11	×	-	해당없음
KT	KT문화재단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3/7	×	충족 (5% 이하)	충족 (30% 이하)
	대우조선해양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0/11	?	-	해당없음
하이닉스					보유 공익법인 없음				
대우건설					보유 공익법인 없음				

〈표 Ⅲ-4〉의 계속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연속 목적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S-O I L	미래우학재단	○	○	○ (한성)	×	0/20	×	충족 (5% 이하)	충족 (50% 이하)
한국GM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	○	○ (창조)	○	0/8	○	-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이파란재단	○	○	×	×	1/8	×	-	-
K T & G	케이티엔지 복지재단	○	○	○ (도원)	○	0/7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케이티엔지 장학재단	○	○	○ (도원)	○	0/5	○	충족 (10% 이하)	해당없음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진의료재단 한일병원	○	○	○ (예일)	○	0/7	○	-	해당없음
	한국전력 한국전력학원	○	○	×	○	0/7	×	-	해당없음
한국전력 공사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2/12	?	-	해당없음
	기초전력연구원	○	○	×	○	0/16	×	지피티 13.89%	해당없음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장학재단	○	○	×	○	0/12	×	김사랑장학재단 65%	충족 (30%이하)

〈표 III-4〉의 계속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진용계좌 개설	공시의무	외부감사	운용소득 포좌사업 의무사용	특수관계 이사 비율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주식 보유 한도 기준 (5%, 10%)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기준 (30%, 50%)
한국가스 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철도 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한국석유 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인천국제 공항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보유 공익법인 없음		

주: 1) '해당없음'은 성실공익법인은 계열사주식보유 한도 규정 적용되지 않음

2) '·'은 주식 없음

자료: 국제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https://npo.info.nts.go.kr/ncdp/index_dist.html)

IV. 외국의 공익법인제도

1. 미국

가. 개요

-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있는 비영리단체를 미국 세법에서는 ‘순수익이 개인 주주 등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으로 정치적 선전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로비활동 등을 하지 않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공동모금, 기금, 재단 등이 해당됨
 - IRC §501(c)(3)의 단체는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으로 구분되며, 이는 단체의 활동에 있어 공적관여(public involvement) 수준에 의해 구분됨¹⁵⁾
 - 공공자선단체는 일반적으로 공공 및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공적 영역과 상당한 상호작용을 함
 - 민간재단은 전형적으로 가족 구성원 또는 개인 간 소규모 집단에 의해 조정되며, 투자소득 및 소규모 자금 등에서 지원을 받음

- 미국의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이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은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 명 혹은 몇 명의 출연자로부터 증여·기부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를 의미함¹⁶⁾

15) 오영호 외,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 882

- 보통 한 명의 개인 기부자나 가족들, 혹은 회사 자산의 투자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지원받음
-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란 민간재단 중 대부분의 수익과 자산을 직접 자선 및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단체들을 말함
 - 민간사업재단에도 민간재단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제한 및 요건이 적용되며, 기부자에게 민간재단(30%)보다 많은 기부금 공제(50%) 등의 이점이 있음
- 민간사업재단의 충족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민간사업재단은 실질적으로 적격지출(qualifying distributions;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볼 수 있음)이 조정된 순소득 또는 최소투자수익(minimum investment return)의 85% 이상 되어야 하며, 자산기준(assets test), 운영기준(support test) 또는 기부기준(endowment test)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¹⁷⁾
 - 자산기준(assets test)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65%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자산기준은 박물관과 도서관과 같은 재단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운영기준(support test)은 민간사업재단의 운영지원금(투자수익 제외)의 85% 이상을 일반 대중 및 5개 이상의 해당 재단과 관련 없는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임
 - 하나의 특정 단체로부터 받는 운영지원금이 25% 이하여야 하며, 총투자소득으로부터 조달되는 운영지원금도 50% 이하여야 함
 - 운영기준은 주로 학회와 도서협회 등 특정 재단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기부기준(endowment test)은 적어도 최소투자수익의 3분의 2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기부기준은 주로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인세

16) IRC §509

17) 순투자자산(자산의 정상 시장가격-자산 취득 비용)의 5%

가 면제됨¹⁸⁾

-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해당 단체는 주식회사, 신탁기금 또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Form 1023을 작성, 면세 신청을 하여야 함
- 국세청으로부터 위의 단체로 인정되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자선기부금으로 인정됨

□ IRC §501(c)(3)에 따른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가 부과됨

- 세법에 명시된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규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함
-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면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고, 신고일에 확정 신고하여야 함

□ 미국의 유산세(estate tax)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인격대표자(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이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과세하고 있음(공동상속의 경우에도 분할 전의 유산총액에 누진세율로 과세)¹⁹⁾

- 비영리단체 등에 상속재산을 유증할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재산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에서만 상속세를 지급하면 됨
- 기부금의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유산세 공제가 허용됨²⁰⁾
-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 이전되는 유산자산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산자산(taxable estate)에서 공제됨²¹⁾
 - 자산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목, 연합단체
 -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및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산하기관
 -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

18) IRC §501(c)(3)

19) IRC §2002

20) IRC §2055(a)

21) IRC §2055

영되는 자선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단체)²²⁾

- 미국의 증여세(gift tax)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로, 증여자가 증여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²³⁾
 - 증여자는 무상 혹은 시장가액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수증자에게 자산을 제공하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이 과세표준임
 - 우리나라와는 달리 증여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beneficiaries)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 자산은 금액한도와는 상관없이 증여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²⁴⁾
 - 증여세의 공제가 인정되는 자선단체의 정의는 유산세와 동일함

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규정²⁵⁾

- 미국의 경우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주식보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의결권이 있는 주식(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의결권 주식 포함)의 보유 한도는 20%로 규정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재단이 보유한 무의결권 주식도 주식보유한도에 포함하여야 함
 - 제3자가 이미 기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를 35%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²⁶⁾

22) Reg. §25.2522(a)-1(a)

23) IRC §2501, §2502

24) IRC §2522

25)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irm/part7/irm_07-027-017.html)

26) IRC §4943 Taxes on excess business holdings

(c) Excess business holdings

- 민간재단이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초과보유주식에 5%의 최초 가산세(initial tax)가 부과됨
 - 최초 가산세 부과 이후에도 초과보유분에 대한 매도가 수정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연도 말에 초과보유분에 대해 200%의 추가 가산세(additional tax)가 부과됨²⁷⁾

- 민간재단에 의한 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재단의 소유주식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재단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될 경우 일반영리기업과의 세제상 형평성이 위배되기 때문임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 In general

The term “excess business holdings” means, with respect to the holdings of any private foundation in any business enterprise, the amount of stock or other interest in the enterprise which the foundation would have to dispose of to a person other than a disqualified person in order for the remaining holdings of the foundation in such enterprise to be permitted holdings.

(2) Permitted holdings in a corporation

(A) In general

The permitted holdings of any private foundation in an incorporated business enterprise are—

- (i) 2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reduced by
- (ii) the percentage of the voting stock owned by all disqualified persons.

In any case in which all disqualified persons together do not own more than 2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an incorporated business enterprise, nonvoting stock held by the private foundation shall also be treated as permitted holdings.

(B) 35 percent rule where third person has effective control of enterprise

If—

- (i) the private foundation and all disqualified persons together do not own more than 35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an incorporated business enterprise, and
- (ii) it is establish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cretary that effective control of the corporation is in one or more persons who are not disqualified persons with respect to the foundation, then subparagraph (A) shall be applied by substituting 35 percent for 20 percent.

27) IRC §4943(b)

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제도

1) 신고 규정

- 미국 국세청은 비영리단체에 2006년부터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자산이 1억달러를 초과하는 단체는 Form 990(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Income Tax)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전자신고 의무조항은 2007년부터 총 자산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단체로 확대되었음
 -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과 자선신탁(charitable trusts)에 대해 Form 990-PF (Return of Private Foundation)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비영리단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penalty)를 부과하며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배한 경우 또는 신고서 내에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단체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로부터 매일 20달러씩 부과되고, 기입해야 할 정보를 누락하였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가산세 최고금액은 1만달러 또는 총수입금액(gross receipts)의 5%까지 부과됨²⁸⁾
 - 그러나 해당 단체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백만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20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의 최고 금액은 5만달러까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은 단체 경영자(managers)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해당 단체가 완성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미국 국세청은 부족한 부분을 기입하게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부여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관리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매일 10달러의 가산세를 최고 5천달러까지 부과함

- 미국 세법 §501(a)에 의해 과세가 면제되는 모든 단체는 해당 단체의 총소득(gross

28) §6652(c)(1)(A)

income), 매출액(receipts), 지출액(disbursements)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²⁹⁾

○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501(c)(3)에 기술된 모든 단체는 매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³⁰⁾

- 당해 연도의 총소득
- 소득과 관련이 있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용
- 면세 목적을 위한 당해 연도 지출
- 자산, 부채, 자본 규모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 해당연도에 수취한 전체 기부금 및 증여금(gifts)과 모든 중요(substantial)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 재단경영진의 이름과 주소, 고임금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³¹⁾
- 재단경영진과 고임금 종업원으로 기술된 개인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된 보수 및 기타 지급금
-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501(h))한 것으로서 로비활동과 관련된 금액³²⁾
 - the lobbying expenditures
 - the lobbying nontaxable amount
 - the grass roots expenditures
 - the grass roots nontaxable amount
-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501(c) 및 section 527³³⁾에 기술된 단체들과의 직·간접적인 이인지출(transfers)이나 거래 및 관계 등에 관한 정보
 - 단체의 면세목적으로 된 펀드의 전환(diversion of funds from the

29) §6033(a)

단, 교회·교회의 협회 및 협의회 각 과세연도에 총수취액(gross receipts)이 5천달러 미만인 특정 단체, 독립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30) §6033(b)

31) §4946(b)(1): an officer, director, or trustee of a foundation (or an individual having powers or responsibilities similar to those of officers, directors, or trustees of the foundation)

32) §501(h): Expenditures by public charities to influence legislation

33) §527 Political Organization

organization's exempt purpose)

- 이익 및 지출의 그릇된 배분(misallocation of revenues or expenses)
- 다음의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 중에 단체의 관리자 또는 단체에 관련된 세금의 예상액
 -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출 초과분에 대한 세금(\$4911)
 - 특정 단체의 부적격 로비 지출에 대한 세금(\$4912)
 - §501(c)(3) 단체의 정치적 지출에 대한 세금(\$4955)
- 당해 과세연도에 §4958(relating to taxes on private excess benefit from certain charitable organizations)에 의해 단체관리자 또는 비적격자와 관련하여 단체에 부과된 세금과 부과된 세금에 관한 단체에 의한 보상금액
- 장관령에 의한 초과이익 거래에 관해 요구되는 정보
- 장관령에 의해 정해지는 부적격자에 관한 기타 정보
- 장관령에 의한 적격의 기부금의 금액과 사용을 포함한 재해구호활동에 관한 정보
- 장관령에 의한 세법 집행의 목적을 위한 기타 정보

2) 민간재단의 규제

-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이외에 투기적 투자행위, 고유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 자기내부거래 행위, 과세대상 지출에 대한 규정이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 과세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제재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음
 - 제한 시간 내에 이러한 수정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좀 더 높은 금액의 추가 가산세 두 가지가 부과됨
 - 민간재단은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음³⁴⁾

가) 투기적 투자행위(Taxes on investments which jeopardize charitable purpose)

- 민간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투자 행위를 하는 경우 민간재단에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초 가산세(Initial taxes)로 부과함³⁵⁾
 - 민간재단 경영진(management)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투기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경영진에게도 투자금액의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는 1만달러임³⁶⁾
- 최초 가산세가 부과된 후에도 해당 과세기간 안에 투기적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추가 가산세(additional tax)가 민간재단에 추가로 부과됨
 - 또한 경영진이 과세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투자를 철회하지 않으면 5%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가산세 한도는 2만달러임

나) 고유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Taxes on failure to distribute income)

- 민간재단은 매년 고유목적에 최소 금액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³⁷⁾
 - 지출되지 않는 소득(undistributed income)이란 지출할 수 있는 금액(distributed amount)에서 적격지출액(qualifying distribution)을 차감한 금액이며,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그 소득의 30%에 상당하는 최초 가산세를 부과함
 - 30%의 최초 가산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은 소득(undistributed income)의 100%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고 있음

34) §508(e)

35) 투기적 투자행위란 출연재산에 대한 면제 지위를 남용하여 본연의 목적이 아닌 투자에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본연의 목적이란 민간재단의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또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려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이 없는 투자를 말함

36) §4944

37) §4942

- 민간재단의 출연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재원 사용에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과세지출대상(Taxable expenditure)으로 명시하고 있음³⁸⁾
 - 과세지출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임
 -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전을 하거나 기타 다른 행위의 비용
 - 특정 공공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직간접적인 선거인 등록 운동 비용
 - 여행, 연구, 다른 비슷한 목적의 개인적 활동을 위해 지급한 금액
 - 면세혜택이 있는 비영리 재단 등이 아닌 곳에 제공된 보조금
 -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지출이 있는 재단은 20%의 최초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단 경영진에게도 5%의 가산세가 1만달러 한도로 부과됨
 - 최초 가산세 부과 이후에도 과세대상지출이 과세연도 내에 수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출액에 추가 가산세로 100%를 재단에 부과하며, 재단 경영진에게도 50%의 추가 가산세가 2만달러 한도로 부과됨

다) 자기내부거래(Taxes on self-dealing)에 대한 과세

- 민간재단과 특수관계인(disqualified persons) 간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유형과 정부 공무원과의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³⁹⁾
 - 이러한 자기내부거래 유형은 아래와 같음
 - 매매, 교환, 임대: 민간재단과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의 매매나 교환, 임대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자금대출: 민간재단이 특수관계인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의 제공: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편의시설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함

38) §4945

39) 특수관계인이란 ① 재단에 상당한 기부(출연)를 한 자, ② 재단경영자, ③ 법인의 의결권, 조합의 이익분배권, 신탁 혹은 비법인조직의 수익원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재단에 상당한 기부(출연)를 한 자, ④ ①, ②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 배상: 민간재단과 특수관계인 간의 부채 등에 대한 배상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선목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함
 - 자산이나 수입의 사용 또는 이전: 민간재단의 수입이나 자산을 특수관계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 민간재단이 정부 공무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특수관계인에게는 적격자(제3자)와 민간재단 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단 경영진에게는 거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최초 가산세가 2만달러 한도로 부과됨⁴⁰⁾
- 최초 가산세 부과 이후에도 자기내부거래 행위가 과세기간 내에 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에 자기내부거래금액의 200%에 상당하는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단 경영진에게는 자기내부거래금액의 50%의 추가 가산세가 2만달러 한도로 부과됨

2. 일본

가. 개요

- 일본의 비영리조직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 비영리법인에는 협동조합, 인격 없는 사단이 있음
 -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불특정다수의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40) §4941

- 또한 민법 외의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분류함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등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주무관청은 국가 및 도도부현으로 분류됨
 - 하나의 공익법인이 복수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을 받음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됨

- 공익법인 중 NPO법인이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⁴¹⁾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공헌활동⁴²⁾으로 특정 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NPO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원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조건이 없으며,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인 단체로서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 NPO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비영리활동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절차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NPO법이 1998년 12월에 시행되면서 이를 해결함
 - 법인격이 없을 경우 조직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이 다수 발생함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은 NPO법인을 특히 인정NPO법인이라 하며⁴³⁾,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음

41) 1998년부터 시행됨

42) 건강서비스, 사회적 교육, 공동체 개발, 과학·문화·예술·스포츠, 환경보호, 재난구조 서비스, 지역방위 활동, 인권 보호, 국제협력활동, 남녀평등사회 구현 활동, 유아 건강증진, 정보기술 개발, 경제활동 증진, 직무능력 개발, 취업기회 확대, 소비자 보호 운동 등 다양함

43) 2010.3.1 현재 인정NPO법인 수는 119개임

- 세제상의 우대조치로는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일반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재산을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가 면제됨
 - 인정NPO법인제도는 운용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NPO법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인정NPO법인제도의 유효기간은 주무관청 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인정 NPO법인이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인정의 효력이 상실됨
- 인정NPO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수입측면에서 판단하는 공공지원 테스트(public support test)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실적판정기간(통상 과거 5년)동안 ‘경상수입금액’⁴⁴⁾에서 ‘기부금 등 수입금액’⁴⁵⁾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단체 구성원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의 비율이 전체 사업활동의 50% 미만이어야 함
 -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거래기록과 장부를 보존하여야 함
 - 임원 또는 사원 총수에서 특정 임원 또는 사원과 그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하여야 함
 - 사업활동은 종교 및 정치와 분리되어 존립되어야 하며, 임원이나 기부자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 실적판정기간 동안 총사업비 중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기부금 총액 대비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에 상당한

44) 총수입금액에서 ①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수입, ② 자산매각에 의한 수입으로 일시적인 금액, ③ 상속·유증에 의한 기부금 중 1인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④ 기부자의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⑤ 동일한 1인당 기부액의 합계액이 1천엔 미만의 기부금, ⑥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위탁사업수입, ⑦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부분 등은 제외하고 도출함

45) 수입기부금 총액에서 첫째, ① 기부자의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② 1인당 연간 1천엔 미만의 기부금, ③ 1인당 기준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둘째, 사원으로부터 받아들인 회비의 합계액으로부터 이 합계액 중 공익적인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도출함

금액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200만엔 초과 해외송금 등을 행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항상 특정 서류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령위반, 부정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어야 함
- 인정 NPO법인의 신청 시에는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해야 함
- 관할청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함

- 한편 2002년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개혁을 결정하고 2005년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익성 판단에 있어 일원화, 전문화된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기존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로 재량의 폭이 크고 법인설립이 간편하지 않았으며, 주무관청이 상이하여 지도 감독이 복잡하고, 정보개시 및 공익성 변별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
 -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내각부에 설치되는 「공익인정등위원회」에서 공익성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도도부현에서는 이에 준하는 합의제 기관이 설치되어 공익성을 판단함
 -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판단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규정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제한규정은 세법이 아닌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i) 운용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와 ii)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기부된 경우에 주식의 취득 및 보유를 인정하고 있음

-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식운용재산을 관리운용할 목적으로, 상장주식이나 장외시장 공개주식과 같은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음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됨
- 또한 지분율 20% 이상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피투자기업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함
 -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명칭, 사무소 위치, 자본금 및 사업내용, 임원 수 및 대표자 이름, 종업원 수,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 보유 사유, 주식취득일, 공익법인과의 관계 등이 있음
 - 이는 신고기준을 주식보유 한도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여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함임
- 계열기업 주식가액 총액한도 제한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제도

1) 신고 규정

- 2001년 8월에 발표된 <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 기업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함
 - 각 주무관청은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지도·감독기준에 따라 열람되는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며, 주요 열람자료는 다음과 같음
 - 정관, 기부금 내역, 회원명단, 사원명단(사단법인의 경우)
 - 사업보고서, 수지계산서, 실질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 또한 주무관청은 그들의 각 홈페이지에 소관 공익법인의 일람표를 기재하여야 함
 - 소관 공익법인의 일람표에는 명칭, 소관부국(담당국 담당과 등), 공익법인의 주요한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직책명 및 성명, 주요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이 포함됨
- 또한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최신 업무 및 재무관련 자료, 사무·사무내용 및 근거법령, 보조금·위탁비의 명칭 및 금액을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의 충실화 및 책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규모란 ‘자산액 100억엔 이상 또는 부채액 50억엔 이상’ 또는 ‘수지계산서상의 총 수입액이나 총 지출액이 10억엔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NPO법인 관련 규정

- NPO법은 민간비영리조직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NPO법인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다음의 사항을 정보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이 해당 NPO법인의 활동을 파악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활동보고서, 자산보유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임원 구성원,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임원의 명단, 10명 이상의 회원의 명단 및 주소
 -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후적인 제도로서 관할청의 감독제도도 마련하였음
- NPO법인에 대한 감독제도로서 i) 보고 및 검사(NPO법 제41조), ii) 개선명령(NPO법 제42조), iii) 설립인정의 취소(NPO법 제43조), iv) 벌칙(NPO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제도가 있음

- 관할청은 ① NPO법인의 의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② 해당법인의 사무소 및 기타 시설에 들어가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 그러나 NPO법인의 자주성을 위해 보고 및 검사는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다고 하는 혐의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 NPO법인 설립인증 후에 NPO법 소정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므로 관할청으로부터의 보고·검사의 대상이 됨
 - NPO법인으로의 설립인증을 받은 후에도 운영상으로 NPO법 소정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내각부는 2003년 3월 'NPO법의 운용방식'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NPO법인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함
 -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의 지출규모가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총지출액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 기타사업에 있어서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서 적자인 경우
 - 기타 사업의 수익이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서 특정비영리활동 관련 사업회계에 전액 이월되지 않은 경우
 - 관리비가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3분의 2 이상 있는 경우

- 관할청은 NPO법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이러한 개선명령은 관할청이 NPO법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감독권 중 하나임
 - 법령·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NPO법인의 운영이 뚜렷하게 걱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관할청은 NPO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NPO법인의 법인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설립의 인증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므로 설립인증이 취소되면 NPO법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법인격이 소멸됨
 - 법정 사유로는 NPO법인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방법에 의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상에 걸쳐 사업보고서, 임원명부 및 정관 등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 설립 인증의 취소에 있어 관할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NPO법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공개에 의해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심리를 공개하여 실시하지 않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 NPO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NPO법 위반에 대하여 NPO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벌칙에는 형벌로서 벌금과 행정상의 처벌로서 과태료가 있음.
- NPO법 제42조의 업무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사,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에게는 NPO법 제47조에 의해, NPO법인에는 NPO법 제48조에 의해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음
 -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NPO법 제4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등기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 재산목록을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파산수속개시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함

3. 국제비교

- 공익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보유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서 일본의 50%, 미국의 20%에 비해 낮은 편임
-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취득과 계열사 주식 보유를 구분하여 제한하

고 있는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는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반면, 조사대상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로 민법이나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및 주무관청에서,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서 맡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공익법인의 투기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수익 또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이외에 투기적 투자행위, 고유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 자기내부거래 행위, 과세대상 지출에 대한 규정이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 과세의 성격을 가진 최초 가산세와 추가 가산세 부과를 통해 공익법인의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음

□ 일본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기준 이외에 신고기준을 별도로 두어 신고기준(지분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본 규정이 없음

○ 신고기준을 주식보유 한도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여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제도임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IV-1>과 같음

〈표 IV-1〉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개별주식 보유한도	5%, 10%	20%	50%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30%, 50%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주식보유한도 근거규정	세법	세법	주무관청 관련법규
사후관리 담당	국세청 및 주무관청	국세청	주무관청
주식보유 신고기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20% 초과 취득 시 신고
신고 규정	의무 있음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허위 공시 등에 대한 보정요구 불이행 시 가산세 규정 있음	의무 있음 *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정보 누락이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보정요구 불이행 시 재단에 대한 가산세와 경영진에 대한 가산세 규정 있음	의무 있음 * 무신고 시 과태료 부과
투기적 행위 금지	규정 없음	주식 보유를 통한 투기적 행위 금지	규정 없음
고유목적 지출 소득금액 기준	공익법인은 70% * 미달 사용 시 10% 가산세 규정 있음	조정된 순소득 또는 최소투자수익의 85% * 미달 사용 시 30%의 가산세와 추가 100%의 가산세가 있음	-

V. 정책방향

- 공익법인 공시자료시스템상 오류나 미공시, 허위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보정 등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가 다수 있었음
 - 공익법인이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 국세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미공시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음
 - 공시자료의 오류나 미공시, 허위공시는 공시담당자의 회계·세무지식의 부족, 담당 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사업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공시’라는 형식적 행정절차 마련 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음
 - ‘공시’라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공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부정확한 공시에 대한 벌칙 강화,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 등이 요구됨

- 공시자료시스템만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당국에서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인증해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여부, 외부 회계감사 이행 여부, 운용소득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의무 공시자료가 아님

- 특히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준은 당해 공익법인의 자의성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음
 -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및 목적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자금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음

- 이 부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외부 회계감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실공익법인의 혜택은 주로 주식보유한도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공익법인 설립부터 주식을 소량 보유하였거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이 되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함
 - － 현행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없음
 -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유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이나 불이익 규정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지출 시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증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이 미비하거나 자기내부거래를 하는 등 현행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 규정을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경영진, 담당 직원에게도 부과하는 등 벌칙 규정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실공익법인 해당 시의 혜택 중 총자산가액 대비 동일 계열회사 주식 보유비율 한도 (30%, 50%) 규정의 미적용은 지나친 면이 있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를 악용할 기회를 줄 수 있음
 - 성실공익법인의 5가지 요건은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했다고 하여 보유 자산의 100%를 계열회사 주식들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현행 주식보유한도 완화에 있어서는 그 효과와 한계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결

정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사례에 비해서 주식보유 한도 수준(5%, 10%)이 낮은 편인데, 이는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왜곡적인 소유·지배 구조를 추구하려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음
- 주식보유한도 완화 도입 시에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 등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등을 동시에 수반하여야 함
- 한편 주식보유한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우선주의 발행을 통하여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표출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은 총발행주식의 4분의 1(상장기업의 경우 2분의 1)까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의 배당수입도 목적사업 예산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보유 제한만을 규제수단으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조사기업 중 배당수익률이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인 4%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수는 19개, 연 예산액 중 배당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수는 9개였음

□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 중 주식보유제한 규정, 출연자의 이사취임제한 규정,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규정 등의 위반 시 벌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추가적인 증여세 또는 가산세의 납부만 이행하면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전적인 벌칙을 부과하거나 공익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결산서류 등 각종 회계 및 세무자료의 제출 및 공시에 있어서, 공익법인은 상당 부분 중복 행정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됨
 - 상증법상의 공시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에 자료의 제출 및 공시, 국세청에 회계 및 세무자료 전자신고, 세무서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등을 부담하고 그 제출 자료도 중복되는 것이 많음
 - 공익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운영 및 감독·관리, 공익법인 자격박탈권한에 이르기 까지 담당 부처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문헌

김진수,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정포럼』, 제15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손원익,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재정포럼』, 제190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손원익·이순태·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오영호 외,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연구 총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CCH, Japan Master Tax Guide 2010/11, CCH, 2010.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IBFD, <http://www.ibfd.org/>

[부록 1] 공익사업의 범위

□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상령 12)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우관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 재단법인 청암언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재단법인 박건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사업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p>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 기부금단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
|---|

사업내용

-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34)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3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3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3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9)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56) 향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6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62)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6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

사업내용

- 하도록 할 것
-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12.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3)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9)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내용

- 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0)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1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4)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15)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5.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9.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부록 2] 특수관계 범위

□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출연자 본인과 다음 어느 하나의 관계있는 자를 말함(「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① 친족⁴⁶⁾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② 사용인⁴⁷⁾(출자에 의하여 지배⁴⁸⁾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a.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해당기업의 임원(법인 「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⁴⁹⁾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b.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해당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해당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④ 본인, ①부터 ③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부터 ③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⑤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⑥ 본인, ①부터 ⑤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부터 ⑤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46)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47)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48)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하여 피지배회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30% 이상, 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49)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그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본인, ①부터 ⑥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부터 ⑥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본인, ①부터 ⑦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부터 ⑦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

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세법연구 12-04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 성실공익법인을 중심으로 -

2012년 8월 23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손원익 · 이형민 · 정경화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93-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